

**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60호**

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(EMS)의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15년 9월 30일

**우 정 사 업 본 부 장**

**국제특급우편(EMS) 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**

**1. 계약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**

**가. 대 상 :**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 (단, 환적프로세스 이용자 제외)

**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**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기준금액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초과 ~20,000	20,000초과
감액률	4%	6%	8%	10%	12%	14%	16%	18%

※ 단, 18%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의 승인 후 적용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**2. 수시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**

**가. 대 상 :**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

**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**

(금액단위 : 만원)

기준금액	30초과~50	50초과
감액률	3%	계약국제특급우편 감액률 준용

※ 단,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**3. 환적프로세스를 이용한 국제특급우편 요금감액**

**가. 대 상 :**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환적프로세스를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(EMS)을 발송하는 이용자

**나. 기준금액과 감액률**

(금액단위 : 1개월, 만원)

기준금액 감액률 (지역/중량구분)	50초과 ~150	150초과 ~500	500초과 ~1,000	1,000초과 ~2,000	2,000초과 ~5,000	5,000초과 ~10,000	10,000 초과
	- 1~4지역 전중량 - 특정 1~6지역 2kg이상	4%	6%	8%	10%	12%	15%
- 특정1~3지역 2kg미만	4%	6%	8%	10%	12%		

※ 단 러시아행은 기준금액에는 포함하되, 감액대상에서 제외

※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 기준이며, 수수료는 제외

**다. 적용방법 :** 전체 접수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, 지역 및 중량 구간별로 감액률 차등 적용

#### 4. 특별감액

구 분	감액요건	감액률	비 고
장기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</li> <li>○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직전 계약기간 이용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</li> </ul> <p>※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일괄계약고객 및 환적프로세스 이용고객은 제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%p</li> <li>2%p</li> </ul>	요금감액에 추가 적용
접수비용 절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터넷 접수시스템(e-Shipping)을 통해 접수</li> <li>○ e-shipping으로 수출우편물 정보 또는 수출신고 번호 제공 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%p</li> <li>1%p</li> </ul>	이용고객에 한해 적용 (창구 e-shipping 고객도 적용)
정부정책 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자상거래 플랫폼(쇼핑몰 등)을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발송하는 업체</li> </ul> <p>※ 감액조건의 금액은 고시된 요금(EMS 프리미엄은 요금표) 기준이며, 환적프로세스 이용고객은 제외</p>	3%p	요금감액에 추가 적용
이용 활성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한 일정 기간에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는 경우</li> <li>○ 신규 상품 또는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해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0.5%</li> <li>~ 50%</li> </ul>	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4-71호(2014.12.30.)는 폐지한다.
2. (기존 계약자에 대한 경과조치) '15.8.30. 이전 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이전 고시 제2014-71호(2014.12.31.)에 따른다.
3. (장기이용 감액 적용)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창고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